

	징계 사건 처리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8. 01. 04.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6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징계”란 견책, 감봉의 징계를 말한다.
2. “중징계”란 정직, 해임, 파면의 징계를 말한다.

제3조(혐의 사실 조사) ① 총장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영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혐의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관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인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2. 비위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하거나 불문 등 내부종결 처리
-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조사자를 임명하거나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혐의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과 그 밖의 교직원은 제2항의 조사자 또는 조사기구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사자 또는 조사기구는 조사를 마치면 즉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교직원 관련 사건 처리기준) ①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제1항에 따라 교직원 관련 사건을 통보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사립학교법」 및 정관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 제73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통보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73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통보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정관 제73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통보
- ② 총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를 할 때는 관련 교직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징계 사유 해당자 통보) 총장이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사장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통보할 때는 혐의 사실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7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총장은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직원이 제4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4.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교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별표 1]

교직원 징계대상자 처리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교비, 국고보조금, 대 학의 물품 등을 횡령하거 나,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부작위· 직무태만(라 목에 따른 소극적 업무 처 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라. 소극적 업무 처리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 고발 의무 불이행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사. 부정청탁 아.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교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적 업무 처리”이란 교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직생, 졸업생, 다른 교직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대학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교비, 국고보조금, 대학의 물품 등을 횡령하거나,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 정청탁을 말한다. 6.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7.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8.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경징계·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 중 알 코 올 농 도 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혈 중 알 코 올 농 도 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 주 운 전 으 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중상해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